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625
------------	-------

발의연월일 : 2025. 12. 24.

발 의 자 : 이주희 · 노종면 · 서미화

백승아 · 장종태 · 송재봉

최민희 · 이병진 · 박용갑

김승원 · 황정아 · 박해철

이광희 · 최혁진 · 김동아

김 윤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디어 이용 행태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중심으로 급변함에 따라 2023년 기준 온라인 광고비가 전체 광고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OTT 서비스 이용률이 77%에 달하는 등 OTT의 사회적 · 경제적 영향력이 지상파 방송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확대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상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방송법」에 따라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반면 유사한 콘텐츠와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되어 이러한 공적 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로 인해 재난 · 안전 · 보건 등 필수적인 공익 정보가 국민 다수에게 도달하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동일한 서비스에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 중 광고의 게시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사업자에게도 일정 비율 이상의 비상업적 공익광고 게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매체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알 권리와 공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12 신설 등).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12(공익광고의 게시) 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 중 자신의 부가통신역무를 이용한 광고의 게시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자는 「방송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대상, 게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2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제22조의12(공익광고의 게시) ①</p> <p><u>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 중 자신의 부가통신역무를 이용한 광고의 게시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자는 「방송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u></p> <p>② 제1항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대상, 게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제104조(과태료) ① (생략)	<p>제10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u><신 설></u>	<p>1. 제22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p> <p>2. ~ 5. (현행 제1호부터 제4</p>
1. ~ 4. (생략)	

6. (생략) ③ ~ ⑥ (생략)	호까지와 같음) 6.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	---